대한민국,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8월 21일(목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(042-481-4464), 박상용 서기관(4469)

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식 출범

- 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) 출범식 개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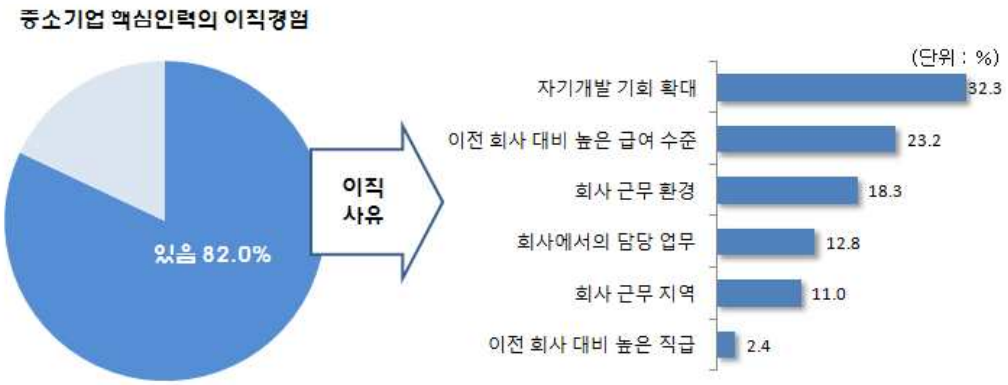
□ **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**하기 위해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이 도입을 추진해온 **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(이하 성과보상기금)이 공식 출범**하였다.

○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8월 21일 성과보상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여 공식 출범을 알렸다.

□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, 특히,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**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**을 겪고 있다.

○ 중소기업 근로자의 **이직률이 15.1%**이고, **근로자의 66.6%가 재직기간 5년 미만**인 실정이며, (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)

○ 중기청의 최근 조사결과(중소기업 200개사, 핵심인력 200명, '14.7), **중소기업의 34.5%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**를 입었고, **핵심인력의 82.0%가 이직 경험**이 있으며, 이직사유는 **자기발전 기회와 임금수준**이었다.



□ 이에, 중소기업들은 **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, 연수·교육 기회 제공 등의 노력**을 하고 있는데, 이를 **체계화하고 지원**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성과보상기금이다.

○ '13.10월 **'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'**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으며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출범한 것이다.

□ 금번 출범한 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**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**하고, **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서 보상으로 지급**하기로 함으로써 재직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다.

○ 중소기업은 **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**하며,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**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천만원 이상**이다.

○ 예를 들어, 핵심인력이 **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**하면,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,440만원을 적립하여

-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,040만원과 연 복리 2.68%(매년 변동) 이자 143만원을 합쳐 **2,183만원(세전수익률 264%)을 받을 수 있다.**

□ 정부는 **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**하고 **비용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**대폭적인 세제 혜택으로 지원**한다.



○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**손비 인정**하며, 추가로 **적립금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** 해준다.

- 즉, 중소기업의 적립금의 **최소 35%에서 최대 47%까지 정부가 지원**해주는 것이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**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**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**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**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되어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○ 중기청이 제도 시행 전 실시한 조사에서 **핵심인력의 81.5%, 중소기업의 92.5%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**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,

○ 핵심인력들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**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, 체면을 세워준다**는 측면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.

□ 한편, 오늘 출범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관리·운용기관인 **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(055-751-9000)**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

○ **공식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**하다.

참고 : 성과보상기금과 희망엔지니어적금과의 차이점 1부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박상용 서기관(☎ 042-481-44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성과보상기금과 희망엔지니어적금과의 차이점

○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희망엔지니어적금은 **제도성격, 가입대상, 가입자 혜택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한 제도임**

- **(제도성격)** 성과보상기금은 **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며,**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가 가변적임

- **(가입대상)** 성과보상기금은 **근속연수, 직종 등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며,** 희망엔지니어적금은 **10년차 이내 R&D 인력이 해당**

- **(가입기업 혜택)** 성과보상기금은 **가입기업에게 손비인정(10~22%) 및 세액공제(25%) 혜택을 부여**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했으며,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중기청·산업부의 R&D 사업 등에서 가산점 부여

- **(가입인력 혜택) 성과보상기금은 200% 이상,** 희망엔지니어적금은 본인 납입 금액 대비 **50~100%의 추가혜택** 부여

구 분	성과보상기금	제2기 희망엔지니어적금
성 격	공제기금	금융상품
법적근거	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	-
운영기관	중진공(정부)	하나은행(민간)
대상기업	중소기업	• 중소기업 •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
대상인력	중소기업 근로자 중 기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 (근속연수, 직종 제한 없음)	• 입사 10년차 이내 • R&D인력
가입기간	최초 가입시 5년 만기 재 가입시 3~5년 만기	5년 만기
가입금액	5년간 2,000구좌 이상 (1구좌 = 1만원)	10~50만원 10만원 단위
매칭비율 (기업 : 인력)	(2 이상) : 1	1 : 1 또는 1 : 2
모집시기	'14년 8월	13.10월~'14.6월
적용금리	연복리 2.68%	4.63%(1기 5.26%)
기업 인센티브	적립금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	중기청·산업부의 R&D사업 등 총 6개 우대